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환각물질 정보 표시·광고 및 게시 행위의 금지 등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864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환각물질 정보 표시·광고 및 게시 행위의 금지 등 ····· 2

Ⅰ. 제안경위

2025년 6월 16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Ⅲ. 검토의견

1. 환각물질 정보 표시·광고 및 게시 행위의 금지 등

개정안은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러한 정보의 표시·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제4항 및 제62조제3호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신 설>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해서는 아니

현 행	개 정 안
	된다. 다만,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의료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위반한 표시·광고한 자에 대하여 폐기·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게시물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과,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1],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2]하고 있음.

환각물질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등이 이에 해당함.

[환각물질의 종류(시행령 제11조)]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 감소를 위해 사용되는 유기용제),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 제외)

현행법에는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온라인 게시에 관한 금지 규정이 부재하여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적 단속 및 그 후속조치에 한계가 있는바,

개정안은 환각물질 오·남용 정보의 확산을 자제함으로써 환각물질의 불법유통 확산에 대한 사전적인 차단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1)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개정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환각물질 정보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 행위의 금지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표시·광고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내용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는 오·남용 관련 내용으로 한정하고 있고,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료 목적인 경우에는 표시·광고 또는 게시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여짐.

둘째, 환각물질 정보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근거 규정 신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게시물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특히 환각물질에 관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심의·삭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3] 등 관계기

---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관과 원활히 협조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환각물질 정보를 표시·광고 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벌칙의 수준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벌칙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이며, 개정안의 내용과 규범목적 및 행위유형이 유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남용 목적의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4]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벌칙의 수준은 과하지 않은 범위 내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각물질의 표시·광고 및 게시 금지는 불법유통과 확산에 대한 사전적인 차단에 효과적이므로 찬성하는 입장임.

---

6.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마약류의 사용, 마약 원료 식물 제배, 소유, 관리, 수출입 등)
나. 제4조제1항(마약의 소지, 사용, 수출, 조제, 매매, 매매 권유·알선 등) 또는 제3항(마약 취급)
다. 제5조제1항(마약의 업무외사용) 또는 제2항(임시마약의 업무외사용)
라. 제5조의2제5항(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소유, 사용, 투약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문 의 처
02)6788-5536